

# 공인승마대회 규정

|            |                      |
|------------|----------------------|
| 제 정        | 2009. 1. 13.         |
| 개 정        | 2011. 7. 20.         |
| 개 정        | 2013. 2. 27.         |
| 개 정        | 2015. 8. 17.         |
| 개 정        | 2017. 3. 27.         |
| 개 정        | 2017. 3. 27.         |
| 개 정        | 2018. 5. 10.         |
| 개 정        | 2019. 2. 15.         |
| 개 정        | 2020. 8. 5.          |
| 개 정        | 2021. 1. 25.         |
| 개 정        | 2021. 5. 18.         |
| 개 정        | 2022. 5. 13.         |
| 개 정        | 2022. 7. 1.          |
| 개 정        | 2022. 9. 7.          |
| 개 정        | 2023. 3. 29.         |
| 개 정        | 2024. 1. 12.         |
| 개 정        | 2024. 3. 12.         |
| <u>개 정</u> | <u>2025. 12. 26.</u> |

**제1조(목적)** 대한승마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주최 및 주관하는 승마 대회를 포함한 모든 공인승마경기에서 말의 복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공정한 경쟁을 하고 경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한다.

**제2조(정의)** 공인승마대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인승마대회(경기) : 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승마대회 및 국내외 지역 승마대회 중 공인경기로 인정한 (일부 종목) <개정 2024. 1. 12.>
  - 가. 종목 : 마장마술, 장애물, 종합(복합)마술, 지구력, 기타 이벤트 경기 등

- 나. Class : 규정 제15조에 따른 종목 난이도별 경기 구분
2. 공인경기 : 대회 주최가 제5조의 절차에 따라 대회를 운영하였을 경우  
공인대회로 인정하고, 해당 종목의 성적을 협회 경기실적으로  
인정<개정 2022. 7. 1., 2023. 3. 29., 2024. 1. 12.>

**제3조(범위)** 본 규정은 공인승마대회에 적용되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제승마협회의 각 규정, 규칙 등에 따라 보완하되 본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4조(승마대회 유치신청 및 개최 신청)** <제목개정 2023. 3. 29., 2024. 1. 12.>

- ① 공인승마대회를 유치하고자 하는 단체는 협회에 신청서(양식 #1)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1., 2023. 3. 29., 2024. 1. 12.>
- ② 삭제 <2024. 1. 12.>
- ③ 유치신청 취소 시 사유서(양식 #2)를 개최 10일전에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1., 2024. 1. 12.>
- ④ 유치신청을 한 공인승마대회는 대회는 「승마경기장 공인시행 규칙」에 따라 공인된 승마경기장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특설경기장 및 미공인 경기장에서 대회를 개최할 경우 추가 경기장 확인을 거친 후 대회가 가능하다. <개정 2022. 7. 1., 2024. 1. 12.>
- ⑤ 협회는 대회 유치신청 결과를 최종 해당 단체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개정 2022. 7. 1., 2024. 1. 12.>
- ⑥ 필요한 경우에 대회중복의 회피, 심판배정, 선수와 마필의 보호 등을 위해 대회 현황을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

**제5조(공인경기 신청 및 개최)**

- ① 지역 승마대회 개최 시 공인경기 개최를 신청하고자 하는 단체는 공

문과 함께 협회에 신청서(양식 #1)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9.>

② 필요한 경우에 대회중복의 회피, 심판배정, 선수와 마필의 보호 등을 위해 대회 현황을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22.

7. 1., 2023. 3. 29.>

③ 세부 공인경기 심의기준은 별첨1에 따른다. <개정 2022. 9. 7., 2023. 3. 29., 2024. 1. 12.>

## **제6조(참가자격)**

① 참가선수는 당해연도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등록이 완료된 선수만이 참가한다.

② 참가 말은 협회가 발급(또는 인증)한 여권이 있어야 하며, 당해연도 경기말로 등록된 말로 제한한다.

③ 외국인으로서 대회에 참가코자 하는 선수는 소속 국가의 승마협회(연맹)에서 발행한 당해연도 선수등록확인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9조에 의거하여 경기력이 있다고 인정된 선수 및 마필에 한하여 대회의 각 종목에 참가가 가능하다.

## **제7조(단체전)**

① 매년 해당연도 단체전에 참가코자 하는 단체는 해당 대회 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주소지 승마협회의 승인을 받아 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단, 단체팀 소속 선수는 유효기간 동안 타 단체팀으로 출전할 수 없다)

② 단체승인 유효기간은 해당연도 등록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③ 종별 단체전 출전을 할 경우 선수 개인의 출전신청비와 별도로 단체전 출전신청비 20만원을 정해진 참가신청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단체전 종목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3. 3. 29.>

| 구 분   | 종 목              | 순위 결정 방법        |
|-------|------------------|-----------------|
| 장 애 물 | 130 또는 135 Class | 3명 출전하여 3명 성적합계 |
| 마장마술  | A Class          | 3명 출전하여 3명 성적합계 |

- ⑤ 단체등록은 종목을 구분하여야 한다.
- ⑥ 협회가 승인한 승마단을 제외하고는 승마단 명칭이 단체 등록 시 포함될 수 없다.
- ⑦ 단체전 출전하는 선수 및 말의 성적은 개인전 성적에도 포함된다.

<개정 2023. 3. 29.>

- ⑧ <삭제 2024. 1. 12.>
- ⑨ 단체전에서 럴레이종목은 제외한다.

## **제8조(참가신청절차 및 기한)**

- ① 대회(개최)요강에 명시한 참가신청 절차 및 기한에 따른다. <개정 2024. 1. 12.>
- ② 참가신청기한을 초과한 신청과 선수 및 말 변경은 불가하다.

## **제9조(참가신청방법)**      참가신청자는 개최요강에 명시된 방법으로 협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① 협회 홈페이지 또는 지정된 홈페이지 또는 앱(App)을 통한 신청 <개정 2024. 1. 12.>
- ② E-Mail 신청(외국선수 등)
- ③ 대표자회의(전국체육대회, 소년체육대회 등) <개정 2024. 1. 12.>

## **제10조(참가자격제한)**

- ① 전년도 다음의 자격을 갖춘 선수에 한하여 차기 대회부터 상위 Class 출전이 가능하다.

## 1. 장애물

| Class                           | 내 용                               |
|---------------------------------|-----------------------------------|
| 130 또는 135 Class →<br>140 Class | 130 또는 135 Class에서 2회 이상 무감점      |
| 120 또는 125 Class →<br>130 Class | 제한없음                              |
| 110 Class → 120 Class           | 110 Class ~ 115 Class에서 2회 이상 무감점 |

## 2. 마장마술

| Class             | 내 용                       |
|-------------------|---------------------------|
| A Class → S Class | A Class에서 2회 이상 비율 63% 이상 |
| B Class → A Class | 제한없음                      |
| C Class → B Class | C Class에서 2회 이상 비율 63% 이상 |

## 3. 종합마술(복합마술) <개정 2024. 1. 12., [2025. 12. 26.](#)>

| Class                | 내 용                                      |
|----------------------|--|
| 종합마술<br>복합마술 B Class | <a href="#">장애물 120Class에서 2회 이상 무감점</a> |

② 다음의 경우 종목 출전이 불가하다.

### 가. 장애물

| Class                 | 내 용                                      |
|-----------------------|--|
| 120 또는 125 Class 입상 시 | 105 Class이하 출전 불가<br>(110 Class까지 출전 가능) |
| 110 또는 115 Class 입상 시 | 95 Class이하 출전 불가<br>(100 Class까지 출전 가능)  |
| 100 또는 105 Class 입상 시 | 85 Class이하 출전 불가<br>(90 Class까지 출전 가능)   |
| 90 또는 95 Class 입상 시   | 75 Class이하 출전 불가<br>(80 Class까지 출전 가능)   |
| 85 Class 이하 입상 시      | 제한없음<br>(60 Class 출전 가능)                 |

1. 상기의 참가자격제한은 전년도 선수와 말의 조합으로 입상 시에 해당된다. (단 선수와 말의 조합이 다를 경우는 출전이 가능하다.)

#### 나. 마장마술

| Class              | 내 용                                |
|--------------------|------------------------------------|
| B Class 이상 입상 시    | D Class 이하 출전 불가 (C Class까지 출전 가능) |
| C Class 이상 입상 시    | E Class 이하 출전 불가 (D Class까지 출전 가능) |
| D Class 이상 입상 시    | F Class 이하 출전 불가 (E Class까지 출전 가능) |
| E, F Class 이상 입상 시 | 제한없음 (G Class 출전 가능)               |

1. 상기의 참가자격제한은 전년도 선수와 말의 조합으로 입상 시에 해당된다. (단 선수와 말의 조합이 다를 경우는 출전이 가능하다.) <개정 2024. 1. 12.>

③ 해당 대회 장애물 100 Class 이하 및 마장마술 D Class 이하에 출전하는 선수는 출전하는 해당 대회의 장애물 120 Class 및 마장마술 B Class 이상에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2. 9. 7., 2023. 3. 29., 2024. 1. 12.>

④ 종합마술 및 복합마술 경기에서 획득한 경기 실적은 마장마술 및 장애물 자격제한과 무관하다. <신설 2022. 9. 7., 개정 2024. 1. 12.>

⑤ 국내승용마 경기도 상기의 선수자격제한이 적용된다.

⑥ Young Horse 경기는 참가선수의 성적 제한과 무관한 경기이며, 선수 및 말의 보호를 위하여 Young Horse 경기 중 6~7세의 말 대상 경기는 17세 이상의 선수, 4~5세의 말 대상 경기는 19세 이상의 선수에 한하여 출전이 가능하다.

⑦ Young Horse 경기의 세부 사항은 해당 대회 개최요강을 따른다.

⑧ 국내승용마 및 Young Horse 경기의 참가말 자격 제한은 대회요강에 따른다.

⑨ 포니경기는 말의 체고가 149cm(편자포함) 이하의 말이 출전하는 경기로 참가 선수는 유소년에 한하여, 포니는 포니경기로만 출전해야 한다.  
<개정 2024. 1. 12.>

⑩ 유소년 포니 경기의 80 Class 이상에서 입상한 선수는 60 Class이하의 Class에 참가할 수 없다.

## 제11조(출전신청비)

① 공인승마대회에 참가하려는 선수는 출전신청비를 협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각 종목별 출전신청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 12., 2025. 12. 26.>

| 종 목       | 출전신청비 1회                                | 유소년선수 출전신청비 1회 |
|-----------|---|----------------|
| 장애물       | 70,000원                                 |                |
| 마장마술      | 90,000원                                 |                |
| 종합마술/복합마술 | 150,000 / <u>100,000원</u>               | 40,000원        |
| 지구력       | 100,000원                                |                |
| 릴레이경기     | 100,000원(팀당)                            | -              |
| 비 고       | ※ 유소년 선수: 등록 선수 중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선수 |                |

(단, 이벤트경기-6단장애물, 조커경기, 기승능력인증경기 등은 종목의 수준을 확인하여 해당 대회의 개최요강에 명시한다.)

③ 출전신청비는 개최요강에 명시한 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출전신청비를 납부하지 않은 선수는 출전할 수 없다.

④ 출전신청비 납부 방법은 협회가 지정한 결제방법에 따른다.

⑤ 참가신청 기간이 끝나고 대회 출전신청비 반환은 없다.

⑥ 장애물경기에 한하여 번외경기를 운영한다. <신설 2025. 12. 26.>

⑦ 대회 개최 중 번외경기를 참가하는 말은 번외경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해당경기 심판장(Bell/C지점)의 승인 하에 출전신청비 금액을 협회에

납부하여야 출전할 수 있다.<개정 2025. 4. 21., 2025. 12. 26.>

⑧ 번외경기는 해당경기의 심판장이 승인한 경우 마지막 순번으로 참가하여야 하고, 번외경기 처리된 말은 그 즉시 이후 경기는 모두 번외처리가 된다. <개정 2024. 1. 12., 2025. 12. 26.>

**제12조(참가비 및 단체등록비 사용)** 협회의 각종 사업의 지원금 및 훈련보조금 등으로 사용한다.

**제13조(개최종목 선정)** ① 해당 승마대회 개최종목은 해당연도 경기력 향상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이사회에서 승인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4. 1. 12.>  
② 승인된 개최종목은 개최지 및 후원단체의 요청으로 회장의 승인 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2.>

#### **제14조(선수 부별)**

① 공인승마대회 개최종목별 부별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각 부는 부별 성립기준과 대회 특성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 <개정 2024. 1. 12.>

1. 초등부(12세 이하부): 당해연도 등록자로 초등학교 재학 중인 선수
2. 중등부(15세 이하부): 당해연도 등록자로 중학교 재학 중인 선수
3. 고등부(18세 이하부): 당해연도 등록자로 고등학교 재학 중인 선수
4. 당해연도 등록자 중 18세 이하의 학교 미재학 선수는 본인의 나이에 맞춰 제13조 제①항 각호의 부로 구분된다.
5. 대학부 : 당해연도 등록자로 대학교 재학 중인 선수
6. 일반부 : 당해연도 등록한 일반(대학원생 포함)
7. 동호인부 : 당해연도 등록자로 학생부(대학교이하)의 경기실적이 없는 일반(대학원생 포함)

② 해외 유학(재학)중인 선수는 대한체육회 전문선수 등록시스템 내 일반부 (기타/일반)로 등록하지만, 본인의 나이에 맞는 부별에 편입되어 공인승마대회 출전이 가능하다.(단, 대학부 편입을 위해서는 대학교 재학증명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외국인 선수는 해당국가 NF에 해당년도 등록여부 및 등급을 명시하여 제출(해당 국가의 NF에서 발급 필요)하고, 확인이 될 경우 본인에 맞는 Class 및 부별에 편입되어 출전할 수 있다.

## 제15조(개최종목 및 수준) 대회 개최 종목과 수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3. 29., 2024. 3. 12., 2025. 12. 26.>

| Class          | 마장마술 경기                      | 장애인<br>경기       | 종합마술<br>경기 | 지구력<br>경기 |
|----------------|------------------------------|-----------------|------------|-----------|
| S-4 Class      | Grand Prix                   | 155 Class<br>이상 | CCI 4star  | CEI 4star |
|                | Grand Prix Freestyle         |                 |            |           |
| S-3 Class      | Intermediate II              | 150 Class       | CCI 3star  | CEI 3star |
|                | Intermediate A, B            |                 |            |           |
| S-2 Class      | Intermediate I               | 145 Class       | CCI 2tar   | CEI 2star |
|                | Intermediate I Freestyle     |                 |            |           |
| S-1 Class      | Prix St-Georges              | 140 Class       | CCI 1tar   | CEI 1star |
|                | Young Riders Freestyle       |                 |            |           |
| A Class        | W.D.C Senior II              | 135 Class       | 국내<br>종합마술 | ~100km    |
|                |                              | 130 Class       |            |           |
| B Class        | W.D.C Senior I               | 125 Class       | 복합마술       | ~80km     |
|                |                              | 120 Class       |            |           |
| C Class        | W.D.C Youth                  | 115 Class       | -          | ~60km     |
|                |                              | 110 Class       |            |           |
| D Class        | Children Preliminary B       | 105 Class       | -          | ~40km     |
|                | W.D.C Preliminary A Children | 100 Class       |            |           |
| E Class        | USEF First Level Test 1      | 95 Class        | ~30km      | ~30km     |
|                |                              | 90 Class        |            |           |
| F Class        | F1 Class                     | 85 Class        | ~20km      | ~20km     |
|                | F2 Class                     |                 |            |           |
|                | USEF Training Level Test 2   | 80 Class        |            |           |
| G Class        | 마장마술-1                       | 70 Class        | 10km       | 10km      |
|                | USEF Training Level Test 3   | 60 Class        |            |           |
| Young<br>Horse | FEI 4-Year Old Horses        |                 |            |           |
|                | FEI 5-Year Old Horses        |                 |            |           |

1. ~~복합마술경기 : 한 선수가 동일말로 장애물경기(120 Class) 및 마장마술경기(B Class)에 참가하여 종합마술경기 순위결정방식으로 실행되는~~

~~경기~~ <삭제 2025. 12. 26.>

2. 장애물 설치는 코스디자이너의 재량에 따라 설치하며, 최고높이는 50% 이상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3. 장애물 경기의 Class는 높이를 기준으로 한다.

**제16조(부별/경기성립)** 대회별 참가신청 시에 세부종목의 부별/경기 성립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 9. 7.><개정 2024. 3. 12.>

- ① 마장마술/장애물/ 종합마술 및 복합마술 종목 : 참가선수 실인원 3인 이상이면 해당종목의 독립된 부로 한다. <개정 2024. 1. 12.>
- ② <삭제 2024. 1. 12.>
- ③ 각 부별의 성립 후 대회 기간 중 부별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그 해당부별은 상급 부별로 포함시켜 경기를 실시하며, 최종 통합 운영도 미성립 될 경우 해당 Class는 취소되며, 이에 한하여 참가비를 환불 조치한다.<개정 2024. 3. 12.>

**제17조(참가순서)** 대표자 회의를 제외한 기타 참가신청의 경우 참가선수가 본인 마필의 출전에 대한 순서를 정하며 전체 참가순서는 이를 고려하여 무작위로 결정한다.

**제18조(경로설계)** 장애물 및 종합마술경기의 경로설계는 경로설계자가 경기장시설, 참가말의 수, 날씨 및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경기의 수준에 맞춰 적절히 설계 및 설치하여야 하고, 심판부 및 경기부(TD)와 검토를 거친다. <개정 2024. 1. 12.>

**제19조(복장)**

- ① 경로답사 시 참가선수는 시합복장을 하여야 하고, 이를 지도하는 자는 단정한 복장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 ② 변외 참가 시 참가선수는 규정에 맞는 안전모와 시합복장을 갖추고 참가해야 한다.

- ③ 입상선수는 시합복장으로 시상식에 참여해야 하며, 단체 대표로 참석하는 대표자는 단정한 복장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시상식에 불참 시 시상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복장 및 승용 장비는 국제승마협회 규정에 따라야 한다.

## **제20조(기권)**

- ① 공인승마대회 참가신청 후 선수 및 마필의 부상, 건강 악화 등의 기권을 할 경우 서면으로 기권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연습마장 및 경기 중 기권사유가 발생하여 기권을 할 경우 스튜어드에게 보고하고 수의사 또는 심판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기권신청 미 이행으로 인한 No Show 발생 시에는 벌금(30만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대회 종료 전까지 벌금 미납 시 벌금 납부 시까지 모든 대회 및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 ④ <삭제 2024. 1. 12.>
- ⑤ 당해 대회 종료 이후라도 부당하거나 부정한 사유로 의도적인 기권을 한 경우에는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대회출전정지(납부 시까지) 이상의 징계조치를 한다.

## **제21조(시상)**

- ① 각 부별로 1, 2, 3위까지 상장과 메달(또는 트로피)을 수여한다.
- ② 매 종목 종료 후 메달(트로피) 및 상장을 시상하며, 시상 진행 일정은 변동 가능하다.
- ③ 각 인원 및 단체 수에 따른 시상은 아래 표와 같다.<개정 2022. 9. 7., 2024. 3. 12.>

| 종목                  | 실인원(단체) | 5명(개)이상 | 4명(개) | 3명(개) | 2명(개)이하 |
|---------------------|---------|---------|-------|-------|---------|
| 종합마술(복합마술)경기        | 1~3위    | 1~2위    | 1위    | -     |         |
| 장애물비월경기<br>(개인/단체전) | 1~3위    | 1~2위    | 1위    | -     |         |
| 마장마술경기<br>(개인/단체전)  | 1~3위    | 1~2위    | 1위    | -     |         |
| 지구력경기(개인전)          | 1~3위    | 1~2위    | 1위    | -     |         |

④ <삭제 2024. 3. 12.>

## 제22조(훈련보조비)

- ① 협회가 개최하는 공인승마대회의 해당 종목에 통합 1위부터 3위의 선수에게 해당 대회 개최요강에 명시된 훈련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개정 2022. 9. 7.>
- ② 공인승마대회 훈련보조비 지급 시 각 종목 분배는 다음과 같다. (단, 대회예산 규모, 개최 종목 변동, 후원사의 요청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개정 2022. 9. 7.>

\* 참고사항 <개정 2022. 9. 7.>

| 구 분 | 장애물 | 마장마술 | 종합마술 |
|-----|-----|------|------|
| 비 율 | 55% | 35%  | 10%  |

\* 종목 미집행 시 마장마술/장애물 5:5 비율로 증가

### ※ 마장마술

| 구 분       | 8 종목 | 7 종목 | 6 종목 | 5 종목 | 4 종목 | 3 종목 |
|-----------|------|------|------|------|------|------|
| S-4 Class | 20%  | -    | -    | -    | -    | -    |
| S-3 Class | 18%  | 22%  | -    | -    | -    | -    |
| S-2 Class | 15%  | 20%  | 26%  | -    | -    | -    |
| S-1 Class | 13%  | 17%  | 23%  | 28%  | -    | -    |
| A Class   | 11%  | 14%  | 19%  | 24%  | 33%  | -    |
| B Class   | 10%  | 12%  | 15%  | 20%  | 28%  | 40%  |
| C Class   | 8%   | 9%   | 10%  | 16%  | 22%  | 35%  |
| D Class   | 5%   | 6%   | 7%   | 12%  | 17%  | 25%  |

### ※ 장애물

| 구 分            | 7 종목 | 6 종목 | 5 종목 | 4 종목 | 3 종목 |
|----------------|------|------|------|------|------|
| 160 Class      | 22%  | -    | -    | -    | -    |
| 150 Class      | 20%  | 26%  | -    | -    | -    |
| 140, 145 Class | 17%  | 23%  | 28%  | -    | -    |
| 130, 135 Class | 14%  | 19%  | 24%  | 33%  | -    |
| 120, 125 Class | 12%  | 15%  | 20%  | 28%  | 40%  |
| 110, 115 Class | 9%   | 10%  | 16%  | 22%  | 35%  |
| 100, 105 Class | 6%   | 7%   | 12%  | 17%  | 25%  |

※ 동 비율은 개최된 종목에서 상위종목을 기준으로 지급함

| 구 分     | 1 위      | 2 위      | 3 위      |
|---------|----------|----------|----------|
| 개인전     | 50%      | 30%      | 20%      |
| 각 종목단체전 | 500,000원 | 300,000원 | 200,000원 |

※ 백원 단위 이하는 절삭함

### 제23조(각종 위반)

- ① 위반의 범위는 동 규정 위반자, 국제승마협회에서 지정한 규정 위반 선수(단체) 등에 한하며 경고누적은 해당 연도에만 유효하다.
- ② 위반선수(단체)에 대하여 경고장을 발급할 경우에는 위반사실을 입증 할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일시가 표현되는 사진, 비디오 또는

발전자를 제외한 2인 이상의 증인)

③ 경고장 발급 횟수에 따른 벌금

1. 1회 경고장 발급
  2. 2회 경고장 발급과 대회 해당종목 실권처리와 30만원의 벌금
  3. 3회 경고장 발급과 차기 3개 대회 출전정지
  4. 4회 경고장 발급과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
- ④ 정당한 사유 없이 벌금을 부과 받은 일로부터 7일 이내에 벌금을 협회에 납부하지 않은 선수(단체)는 납부 시까지 대회출전을 금지 시킬 수 있다.
- ⑤ 대회 중 경기장 질서 문란행위자는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한다.
- ⑥ 자격증이 없는 지도자가 선수를 지도하다가 사고 시 협회와 무관하게 당사자 책임이며 당해 대회출전 정지 후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한다.

## 제24조(이의신청 및 상소)

- ① 조직위원회는 경기위원장(T.D) 및 각 종목 심판장을 배정하여야 한다.
- ② 대회 중 심판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기타 대회에 관련된 사항을 상소신청 할 경우 해당 선수, 지도자, 보호자 중 1명만이 신청할 수 있다.
- ③ 이의신청은 해당 경기종목 종료 후 30분 이내에 이의신청서(양식 #3)을 작성하여 이의신청 비용 20만원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단, 이의신청이 수락될 경우 비용은 반환하며, 기각될 경우 비용은 반환하지 않는다.)
- ④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할 경우 결과 통보 14일 이내에 상소장(양식 #4)을 상소비용 50만원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단, 상소비용은 반환하지 않는다.)
- ⑤ 이의신청 접수 시 해당 대회의 심판장 및 경기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상소 발생 시 본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한다.

⑥ FEI 일반규정 제161조 2항에 해당할 경우 이의신청이 불가하며, 이에 불복 시 관련 선수의 해당 종목 및 Class가 개최되는 3개 대회 출전 자격이 정지된다.

## **제25조(안전)**

- ① 대회위원회는 모든 종류의 참가자 또는 마필의 사고, 수송한 장비분실 및 파손 등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며, 그에 대한 책임은 마주와 선수의 책임이다.
- ② 상기와 같은 사유로 동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마주 및 선수에게 개인 보험 가입을 강력히 권고한다.
- ③ 대회에 참가하는 유소년 선수는 선수의 안전을 위하여 연습 또는 경기 참가 시 반드시 안전모와 안전조끼(프로텍터)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26조(예외)** 해당 공인승마대회 대표자회의 결정사항과 대회요강에 특별히 명시된 내용은 동 규정이나, 국제승마협회 규정보다 우선 적용한다.

<제목개정 2022. 7. 1., 2023. 3. 29.>

## **부 칙 <2009. 1. 13.>**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1. 1. 26.>**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11. 7. 20.>**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2. 27.>**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8. 17.>**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3. 27.>**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5. 10.>**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2. 15.>**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협회 관리위원회에서 개정을 승인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0. 8. 5.>**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1. 1. 25.>**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1. 5. 18.>**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2. 5. 13.>**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2. 7. 1.>**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2. 9. 7.>**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3. 3. 29.>**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4. 1. 12.>**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기)** 제10조(참가자격제한) 제9항 포니경기 말의 체고 149cm (편자포함)는 2025. 1. 1.일자로 적용하고 그 전까지는 151cm(편자포함)을 적용한다.

## **부 칙 <2024. 3. 12.>**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2025. 12. 26.>**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첨 #1

## 승마대회 공인 심의 기준

가. 기본 조건 <개정 2023. 3. 29.>

- ① 해당 종목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대한체육회 선수등록을 하여야 함
- ② 해당 종목에 참가하는 모든 말은 본 협회 말 등록을 하여야 함
- ③ 공인신청 대회 주최 단체는 공인신청비 100만원을 납부하여야 함
- ④ 본 협회에서 공인 점검을 위하여 해당 종목 Class별 자격에 부합하는 심판 1명 직원 1명 배정 및 파견
- ⑤ 말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고, 선수와 말이 안전한 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에서 대회를 개최하여야 함
- ⑥ 본 협회에서 파견한 인원에 대한 체제비 및 수당을 지원하여야 함
- ⑦ 해당 종목은 본 협회 공인승마대회 및 FEI 규정을 적용하여 진행하여야 함
- ⑧ 공인받은 종목은 본 협회가 인정하는 경기실적으로 반영됨

나. 공인비 : 신청 종목 Class 총 참가비의 10% <개정 2023. 3. 29.>

다. 공인 절차 <개정 2023. 3. 29.>

- ① 대회 개최 전 지역승마재회 공인 신청서 제출 및 공인 신청비 납부
- ② 대회 개최 전 지역승마대회 대회 공인 신청서 제출

| 신청 시 제출 문서 | 포함 사항  |
|------------|--|
| 공인 신청서     | 공문 제출  |
| 사업 계획서     | 1) 공인신청 종목<br>2) 대회개요(기간, 장소, 개최종목, 배정심판 등)<br>3) 선수 및 말 등록 확인 방안<br>4) 공인 신청비 및 공인비, 파견위원 예산확보 방안 |
| 대회 요강      | 해당 종목 본 협회 및 FEI 규정을 준용한 대회요강  |

- ③ 본 협회에서 사업계획서 및 대회요강 심의 검토

- ④ 확인 후 공인 신청 종목 개최를 승인하고, 대회 개최 시 공인 신청 종목의 점검을 위한 심판, 사무처 직원 각 1명 파견
- ⑤ 공인 신청 종목 개최 및 공인 신청 종목 경기 수에 따른 공인비 납부
- ⑥ 파견 심판의 공인 승인
- ⑦ 공인 신청 종목의 결과 대한체육회 경기결과시스템에 입력

양식 #1

## 대회 승인 / 공인 신청서

|                   |   |   |  |
|-------------------|---|---|--|
| 사업명               |   |   |  |
| '22년 사업개최         | <input type="checkbox"/> 개최 <input type="checkbox"/> 미 개최(신규)   | '23년 사업 계획  | <input type="checkbox"/> 승인 신청<br><input type="checkbox"/> 공인 신청 |
| 개최 단체             |   | 대표자   |  |
| 신청 종목<br>(공인 신청시) |   |   |  |
| 대회운영 방법           | <input type="checkbox"/> 개최 단체<br><input type="checkbox"/> 외주업체 |   |  |
| 예산운영 방법           | <input type="checkbox"/> 자체                                     | <input type="checkbox"/> 기타단체(지자체 등)                    |  |
| 대회기간              | 연계행사 유  | 개최 장소   |  |
|                   | 무   |   |  |
| 실무 부서             |   | 연락처   |  |
| 실무 담당자            |   | 연락처   |  |
| 개최 예산             | 개최 단체   | 국비  | 기타( )  |
|                   | 천원  | 천원  | 천원   |
|                   | <input type="checkbox"/> 확보 <input type="checkbox"/> 예정         | <input type="checkbox"/> 확보 <input type="checkbox"/> 예정 | <input type="checkbox"/> 확보 <input type="checkbox"/> 예정          |
| 사업목적              |   |   |  |

위와 같이 표제대회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 상기 승인 신청 대회의 개최 현황 및 규정 준수 여부, 안전사고 예방 등을 본 협회가 검토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 . . .

신청자 (인)

대한승마협회 귀중

양식 #2

## 대회 승인 / 공인 취소 신청서

|  |      |  |
|--|------|--|
| 단체명  |      |  |
| 승인 /<br>공인<br>신청<br>대회<br>개요                       | 대회명  |  |
|  | 대회기간 |  |
|  | 대회장소 |  |
|  | 연락처  |  |
| 승인 /<br>공인<br>신청<br>취소<br>사유                       |      |  |
|  |      |  |
|  |      |  |
|  |      |  |
| 귀협회에 본 단체가 승인 / 공인 신청한 승마대회를 상기 사유로 취소<br>를 요청합니다. |      |  |
| 20      년      월      일                            |      |  |
| 신청자 : (인)  |      |  |
| 대한승마협회 귀중  |      |  |

양식 #3

## 공인승마대회 이의신청서

|  |   |     |     |
|--|---|-----|-----|
| 대회명  |   |     |     |
| 기간   |   |     |     |
| 이의신청인  |   | 관계  |     |
| 소속   |   | 연락처 |     |
| 종목   |   | 일시  |     |
| 선수명  |   | 마명  |     |
| 심판 / 경고<br>결과                                      |   |     |     |
| 이의신청<br>사유   |   |     |     |
| 상기 심판(경고)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귀 협회 대회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   |     |     |
| 년  | 월 | 일   |     |
| 이의신청인 :  |   |     | (인) |
| 대한승마협회 귀중  |   |     |     |

양식 #4

## 공인승마대회 상소장

|  |   |     |     |
|--|---|-----|-----|
| 대회명  |   |     |     |
| 기간   |   |     |     |
| 이의신청인  |   | 관계  |     |
| 주소   |   |     |     |
| 소속   |   | 연락처 |     |
| 종목   |   | 일시  |     |
| 선수명  |   | 마명  |     |
| 심판 / 경고<br>결과                                  |   |     |     |
| 이의신청<br>사유                                     |   |     |     |
| 이의신청 결과  |   |     |     |
| 상기 심판(경고)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귀 협회 대회위원회에 상소합니다. |   |     |     |
| 년  | 월 | 일   |     |
| 상소인 :  |   |     | (인) |
| 대한승마협회 귀중                                      |   |     |     |

양식 #5

## 번외경기 신청서

|            |   |   |     |
|------------|---|---|-----|
| 대회명        |   |   |     |
| 대회장소       |   |   |     |
| 번외경기 종목    | <input type="checkbox"/> 마장마술 <input type="checkbox"/> 장애물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 번외경기 Class |   |   |     |
| 번외경기 일자    | 202   | 년 | 월 일 |
| 선수명        |   |   |     |
| 마명         |   |   |     |
| 번외경기 사유    |   |   |     |
| 연락처        |   |   |     |

상기와 같이 번외경기를 신청하며, 번외경기 이후 번외 처리된 말은  
상기 대회 모든 경기에 번외처리됨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                 |                             |                              |
|-----------------|-----------------------------|------------------------------|
| 번외경기 출전신청비 납부여부 | <input type="checkbox"/> 납부 | <input type="checkbox"/> 미납부 |
| 상기 번외신청을 승인합니다. |                             |                              |
| 20 년 월 일        |                             |                              |
| 해당 종목 심판장       | (서명)                        |                              |

-----  
번외경기 승인 확인증

|      |  |
|------|--|
| 출전번호 |  |
|------|--|

양식 #6



## 20( )도 마장마술 단체등록신청서

1. 단체명 :

2. 단체장 :

3. 단체주소 :

4. 연락처 :

5. 구성원

| 구분 | 선수명 | 직업 | 연락처 | 비고 |
|----|-----|----|-----|----|
| 감독 |     |    |     |    |
| 코치 |     |    |     |    |
| 선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기와 같이 20( )년도 단체 등록을 신청 합니다.

20 . . . .

단체장 : 인

소속협회장 : 인

대한승마협회 귀중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테니스경기장 303호
- TEL 02-422-7563 / FAX 02-420-4264

양식 #7



## 20( )도 장애물 단체등록신청서

1. 단체명 :

2. 단체장 :

3. 단체주소 :

4. 연락처 :

5. 구성원

| 구분 | 선수명 | 직업 | 연락처 | 비고 |
|----|-----|----|-----|----|
| 감독 |     |    |     |    |
| 코치 |     |    |     |    |
| 선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기와 같이 20( )년도 단체 등록을 신청 합니다.

20 . . .

단체장 : 인

소속협회장 : 인

대한승마협회 귀중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테니스경기장 303호
- TEL 02-422-7563 / FAX 02-420-4264